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목 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처분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윤민영
	담당부서 (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황승현		연락처	044-202-3330
	과장	한영규		이메일	ymy0125@mail. go.kr

2024. 04.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처분 강화		
	2.규제조문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3.위임법령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정('18.12월)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의 증가('18년 580개소→'23년 790개소) 및 생산시설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제보건수 증가(최근 3년 간 43건)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중대위반행위 반복시설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를 통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필요 2. 정부개입 필요성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상향(1%→2%) 법 개정('24.2.6.)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진입 확대 및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기준, 직접생산 기준 미달 등 중대위반행위 적발시설에 대한 처분강화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 － (기존)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1% → (개정)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2%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 중증장애인생산물 품질 및 생산시설 관리 미흡 지적('23년 국감, 김민석 의원)		
	7.규제내용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미달행위를 생산시설 적격성 기준·장애인 고용기준·직접생산기준 미달 등으로 세분화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지정취소' 처분의 적용 차수를 기존 4차에서 2차 또는 3차로 단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행 처분기준 유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시설 약 794개 소(’23.3월 말 기준)		
	9.규제목표	중대위반행위 반복적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및 위반행위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뢰도 향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부담 증가 ☐ 편익 -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환경 조성 - 장애인생산품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우선구매 확대 기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청자의 적격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 명령	지정 취소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그 밖의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 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현 행	개 정 안				
	않은 경우				
	1) 품질보장 의무를 위 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u>지정 취소</u>	
	2) 계약을 이 행하지 않 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u>지정 취소</u>	
	마. 법 제18조 에 따른 지 도·감독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 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u>지정 취소</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18.12월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정 이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증가('18년 580개소 → '23년 790개소) 및 생산시설 관련 부정행위 신고건수 증가(최근 3년 간 43건)에 따른 생산시설

관리강화 필요

〈생산시설 지정 및 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 개소, 명 / 누적 / 연도 말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정 생산시설	66	154	196	260	351	402	492	544	580	630	674	722	762	790
장애인 근로자	1,912	4,044	5,046	6,765	8,264	9,292	10,062	11,846	12,704	13,597	14,584	15,361	16,100	17,406
중증 장애인	1,723	3,517	4,390	5,975	7,257	8,092	9,507	10,280	11,058	10,408	11,064	12,210	12,880	13,216

- (필요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상향(1%→2%) 법 개정('24.2.6.)에 따른 생산시설 진입 확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중대위반행위 반복적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필요

※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김민석 의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제고 및 생산시설 관리미흡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행정처분 적용기준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처분기준 강화
	내용	행정처분 기준 미달행위를 경중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고 중대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학계·현장)	생산시설 지정기준 연구용역 ('23.5월 ~ 12월)	유사입법례 등 참고한 기준 강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에 따른 생산시설 규모 증가 예상 및 중대위반행위 반복적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안임

3. 규제목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리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보장 및 직업재활 기회부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미달행위에 대해 제도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기회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 정하였고,
 - 1차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 처분을 통해 생산시설에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처분이력은 누적회차 적용 시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생산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 보장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① 장애인복지시설 처분기준

○ 시설기준 미달 : (1차) 개선명령 → (2차) 시설장교체 → (3차) 시설폐쇄

○ 시설폐쇄 가중처분 차수 : 3회

② 어린이집 처분기준

○ 설치기준 미달 : (1차) 운영정지1월 → (2차) 운영정지3월 → (3차) 시설폐쇄

○ 시설폐쇄 가중처분 차수 : 3회

③ 장애인기업 처분기준

○ 기업요건 미달 : (적발 시) 장애인기업의 확인취소

○ 기업취소 가중처분 차수 : 가중처분 차수 적용 등 별도 세부기준 無

④ 장애인표준사업장,

○ 인증요건 미달 : (적발 시) 인증취소

○ 인증취소 가중처분 차수 : 가중처분 차수 적용 등 별도 세부기준 無

5 사회적기업 처분기준

○ 인증요건 미달 : (적발 시) 인증취소

○ 인증취소 가중처분 차수 : 가중처분 차수 적용 등 별도 세부기준 無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생산시설) 위반행위 1차적발에 따른 처분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여 '개선명령' 조치 이후 3개월의 시정조치 기한을 두고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유지의 예외규정과 행정처분 경감규정을 두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리 인력 활용을 통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인력 활용을 통해 별도 재정소요 미발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2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 법령별로 가중처분을 둔 입법취지, 기간, 위반행위의 빈도 및 제재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전력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규정
- ('23.5~1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연구를 통해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 ('24.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상향(1%→2%) 법 개정 통과

2. 향후 평가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 적발사례 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완화 필요사항 발굴 등 관련 규제 지속 개선

3. 종합결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18년 580개소 → '23년 790개소)에 따른 관리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직접생산 기준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를 통해 동 제도 목적인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직업재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 위반사항 1차 적발 시설에 대한 처분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시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위반행위 반복시설에 대한 처분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